

도시관리계획(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11호(2023. 4. 6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12월 26일

강 남 구 청 장

1. 결정(변경)취지

- 「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」으로 결정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 하고자 하는 사항임
 - 신사동 532-3, 신사동 532-2 대지의 분할·교환

2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(경미한 변경)

-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가구번호	합계(㎡)	위치	면적(㎡)	비고
C10	5,133.5	신사동 532-2	243.1	분할전후 면적 증감 없음 (2.7㎡ 면적 교환)
		신사동 532-3	291.2	

- 변경사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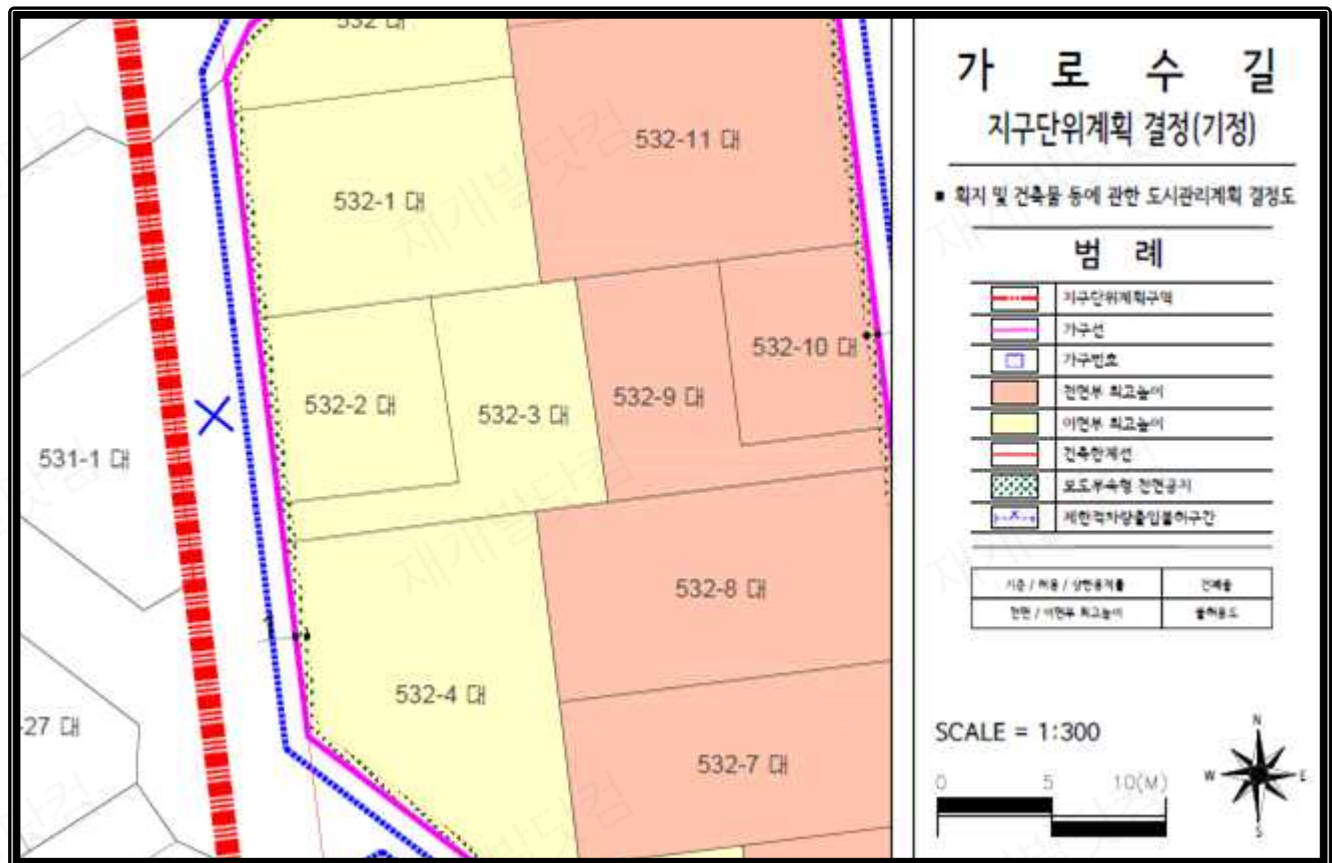
위 치	결정(변경) 내용	변 경 사 유
신사동 532-2 신사동 532-3	대지의 분할·교환	신사동 532-3의 차량 진출입 폭 확보를 위한 획지선 변경

※ 상기사항 이외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

3. 관계도면: 붙임 지형도면 참조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기정)

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변경)

